

의안번호	2201164
의 퇴 인	윤건영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6.
추 계 번호	24E1531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과표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의
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5년 892억원, 2029년 2,345억원 등 2025~2029년 5년 간 총 8,853억원(연평균 1,77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6,613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2,240억원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(안 제42조제1항제1호나목)	-892	-1,183	-2,073	-2,360	-2,345	-8,853	-1,771
－ 국세(74.7%)	-666	-884	-1,549	-1,763	-1,752	-6,613	-1,323
－ 지방소비세(25.3%)	-226	-299	-525	-597	-593	-2,240	-44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
1	안 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) 제1항 제1호나목	○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	—		
		<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>			
				2025~2026년	2027년 이후
		현행		9/109	8/108
		개정안		10/110	10/110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) 제1항제1호나목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‘공제대상금액 × 공제율’로 산출하고,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공제율 변화를 반영한 의제매입세액 금액의 차이로 추계
 -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공제대상금액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정
 - 공제대상금액 = $\min(\text{①}, \text{②})$ ¹⁾
 - ①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
 - ②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× 한도율²⁾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기(6개월)를 기준으로 하므로, 연간 공제 신고자료는 1기 및 2기 자료를 합산하여 활용
 -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조정되더라도 공제대상금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제
- 부가가치세 징수 시점을 고려해 세수효과를 조정하되, 매년 징수 기간별로 공제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

1)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5호서식]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

2) 의제매입세액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, 업종별·규모별로 30~50%(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0~75%)의 한도율을 적용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공제대상금액 실적)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고한 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은 2017년 15.0조원에서 2023년 14.4조원으로 연평균 0.6% 감소하는 추세

[표 2]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
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신고실적: 귀속 기준, 2017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률
공제대상 금액	149,738	151,359	151,088	149,494	148,676	145,767	144,312	-0.6

주: 1. 공제대상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('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')의 신고내역을 집계한 것으로, 확정신고 및 결정·경정 전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

2. 연간 금액은 1기 및 2기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연간 세수효과) 최근 공제대상금액의 변동 추세를 반영할 경우, 개정안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시 세수는 2025년 귀속 기준 1,18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

- (공제대상금액) 추계기간 동안 이전(2017~2023년)의 연평균 공제대상금액 증감률($\Delta 0.6\%$)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여 추정함

[표 3]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
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추정: 귀속 기준, 2024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공제대상금액	143,427	142,548	141,674	140,805	139,941	139,083

- (공제율) 현행 제도 및 개정안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
 - (현행) 2026년 12월 31일까지 9/109 적용,
2027년 1월 1일부터 8/108을 적용할 예정
 - (개정안) 2025년 1월 1일 이후 10/110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4]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

	2025~2026년	2027년 이후
현행	9/109	8/108
개정안	10/110	10/110

- (의제매입세액) 공제대상금액에 현행 공제율을 적용한 의제매입세액은 2025년 귀속 기준 1조 1,770억원, 개정안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1조 2,959억원으로 추정
- (연간 세수효과) 개정안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는 현행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2025년 귀속 기준 1,18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

[표 5]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및 세수효과 추정: 귀속 기준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의제매입세액(현행 공제율 적용, A)	11,770	11,698	10,430	10,366	10,302
의제매입세액(개정안 공제율 적용, B)	12,959	12,879	12,800	12,722	12,644
연간 세수효과(A-B)	-1,189	-1,182	-2,370	-2,356	-2,341

□ (세수효과)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5년 892억원 등 2025~2029년 5년 간 총 8,853억원(연평균 1,77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귀속 기준 자료로 추정 한 연간 세수효과를 기준으로 하되, 부가가치세의 징수 시점을 고려해 연도별 세수효과를 조정함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연도별 세수효과를 산출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6,613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2,240억원 감소

[표 6]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시
세수효과: 정수 기준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892	-1,183	-2,073	-2,360	-2,345	-8,853	-1,771
－ 국세(74.7%)	-666	-884	-1,549	-1,763	-1,752	-6,613	-1,323
－ 지방소비세(25.3%)	-226	-299	-525	-597	-593	-2,240	-448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